

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보호 교육 안내

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의3(인권교육)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의3(인권교육)*에 의거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**을 의무적으로 이수(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)하여야 합니다.

*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인권교육 의무화

** 방법: 집합교육(인권교육기관), 방문교육(강사 방문), 인터넷 교육(사이버교육센터)

< 인터넷 교육 안내 >

■ (주관)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

■ (신청경로)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교육(edu.kohi.or.kr) 접속 → 로그인(처음 접속자 회원가입) → 사이버교육 알리미 '의무교육 수강사이트' 바로가기 클릭 → '노인인권 교육' 클릭 → 교육과정(4개 과정*) 확인 및 수강 신청하여 학습(개인 개별신청)

* 생활시설편, 이용시설편, 주야간보호서비스편, 방문요양서비스편

■ (신청대상)

- (2021년 미 이수자) 한시적 유예기간('22.2.7.~2.28.) 동안만 운영, 반드시 동기간에 수강
- (2022년 교육 대상자) '22.3월부터 신청가능

최근 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폭행·방치하는 등의 노인 학대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(신체적·정신적·성적·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)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2.

국민건강보험공단